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587 제출연월일: 2024. 10. 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

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,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[2023. 3. 23. 선고 2020헌가1, 2021헌가10(병합) 결정] 취지를 반영하여,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, 해당 외국인의보호에 대한 심사,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,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(안 제63조)
- 1)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18 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, 해당 외국인이 「국가보안법」,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아 3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.
 - 2)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3 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도록 함.
- 나.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(안 제63조의3 신설)

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거나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.

다.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(안 제66조의3 신설)

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.

- 라.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・운영(안 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)
 - 1)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, 계속 보호 승인 및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.

- 2)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상임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함.
- 3)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,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.

법률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5조(보호에 대한 심사청구)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 국·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(이 하 "외국인보호위원회"라 한다)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.

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,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 정을 한다.

제56조의9의 제목 "(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)"를 "(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이의신청"을 "심사청구"로 한다.

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3조(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) 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

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8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. 다만, 송환하려는 사람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사유로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아 추가로 18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.

- 1. 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
- 2.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
- 3.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
- 4.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, 제2장 외환의 죄,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
- 5.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, 상해, 강 간, 추행,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②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보호기 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 속 보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,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,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
-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3조의2(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) ① 지방출입국·외국 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에는 즉시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 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해제를 할 수 있다.
 - ④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제63조의3(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) 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(이하 "재보호"라

한다)할 수 있다.

- 1.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
- 2.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3.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를 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,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, 제57조, 제63조(제4항을 제외한다)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65조(보호의 일시해제) 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(情狀), 해제요청사유,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.
 -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(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한다)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 정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출입국 · 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

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,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장에 제6절의2(제66조의3) 및 제6절의3(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절의2 의견진술

제66조의3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 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- 1.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
- 2.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
- 3.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
- 4.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속 보호 승인의 신청
- 5. 제63조제2항에 따른 계속 보호 승인의 신청
- 6.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계속 보호 승인의 신청
- 7.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

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

- 제66조의4(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) ① 외국인 보호·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, 계속 보호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.
-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. 제66조의5(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)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
 - 2.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속 보호 승인 업무
 - 3. 제63조제2항에 따른 계속 보호 승인 업무
 - 4.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계속 보호 승인 업무
 - 5.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
 - 6.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
 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
- 제66조의6(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법무 부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도록 하

여야 한다.

-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두며, 그 상임위원의 임명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 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- 3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, 정치학, 사회학,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5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
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 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제66조의7(위원의 임기) 위원장,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. 두 차례

연임할 수 있다.

- 제66조의8(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)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- 1.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 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 (回避)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6조의9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(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위원(이하 이조에서 "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,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(이 하 이 조에서 "대리인등"이라 한다)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「민법」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- 3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,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 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
- 제66조의10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, 외국인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6조의11(존속기한)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- 제66조의12(심의·의결 등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 -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·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 -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

하면 피보호자, 관계인,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,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66조의13(의결정족수 등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 -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.
- 제66조의14(분과위원회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6조의15(사무국의 설치 등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 -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,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

무를 처리한다.

- ④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그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6조의16(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) 외국인보호위원회(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66조의17(운영)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5조제8호 중 "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"을 "제56조, 제63조제1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"제63조제5항"을 "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) 법무부장관은 제66조의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위원

- 의 임명·위촉, 사무국의 설치행위 등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·운영 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- 제3조(보호 중인 사람의 계속 보호 등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출입국·외국 인관서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15개 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피보호자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 른 계속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체 없이 제63 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 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보 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.
 - 1.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보호를 시작한 날부터 36개월을 넘은 경우
 - 2.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이 있기 전에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호 중인 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
 - ③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계속 보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5년

- 7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.
- 제4조(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.
- 제5조(계속 보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6조(보호의 일시해제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를 할 수 없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혂 개 정 제55조(보호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55조(보호에 대한 심사청구)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 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 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 출입국 · 외국인관서의 장을 거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지방출입국・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(이하 "외국인보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 위원회"라 한다)에 보호에 대한 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 정으로 기각하고, 이유 있다고 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람 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.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, 그 청구 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결정에 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 다. 제56조의9(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 제56조의9(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 시) 지방출입국 ·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 한 이의신청, 제56조의6에 따른 -- 심사청구----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 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 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

한다.

의 보호 및 보호해제) ① 지방 출입국 · 외국인관서의 장은 강 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 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출입국 · 외국인관서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 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 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 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⑤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 🛚

제63조(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| 제63조(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의 보호) ① 지방출입국ㆍ외국 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 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 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 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8개월 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 호할 수 있다. 다만,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고,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 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아 추가 로 18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 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 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. 1. 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

- 를 범한 사람
- 2.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 한 테러방지법」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

- 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 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을 붙일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 4.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,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
- 3. 「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_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
 - 죄, 제2장 외환의 죄, 제4장 국 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 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
 - 5.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. 상해, 강간, 추행, 강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
 - ② 지방출입국 · 외국인관서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보 호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 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 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 아야 한다.
 -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 송하도록 지방출입국 · 외국인관

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,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,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.

제63조의2(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) ① 지방출입 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에는 즉시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. ②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해제를 할 수 있다.

④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

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63조의3(보호해제된 사람의 재 보호) 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 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(이하 "재보호"라 한 다)할 수 있다.

- 1.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
- 2.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
- 3.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 해제를 할 때 붙인 조건을 위 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, 제56조의2부

제65조(보호의 일시해제) ① 지방 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직 권으로 또는 피보호자(그의 보 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 한다)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 의 정상(情狀), 해제요청사유, 자산,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 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 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,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터 제56조의9까지, 제57조, 제63</u> <u>조(제4항을 제외한다) 및 제63</u> 조의2를 준용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 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 함하지 아니한다.

제65조(보호의 일시해제) ① 지방 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직 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(情狀), 해제요청사유,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 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 자(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 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)의 신청 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 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. ③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 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 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

다.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,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제6절의2 의견진술

제66조의3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
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
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
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
어야 한다.

- 1.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

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
- 2.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 호기간 연장 허가
- 3.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강 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 호
- 4.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 속 보호 승인의 신청

5. 제63조제2항에	따른	계속	보
호 승인의 신청			

- 6.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계속 보호 승인의 신청
- 7.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 시해제의 취소

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

제66조의4(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) ① 외국인 보호·재보호 에 대한 이의 심사, 계속 보호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 위원회를 둔다.

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 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 행한다.

제66조의5(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)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

 2.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

 속 보호 승인 업무

<신 설>

<신 설>

<신 <u>설></u>

- 3. 제63조제2항에 따른 계속 보 호 승인 업무
- 4.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

 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계속

 보호 승인 업무
- 5.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
- 6.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 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
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·연구·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

제66조의6(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외 부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 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대

- 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한다.
-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

두며, 그 상임위원의 임명 및 직 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- 3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
- 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, 정치학, 사회학,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5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

-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
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
 함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제66조의7(위원의 임기) 위원장,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4항제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제66조의8(위원의 해임 또는 해 촉)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 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- 1.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

- 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(回避)하지 아니한경우
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66조의9(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 피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(제66 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 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원"이 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인보호위원회의 심의・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,
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
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
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
 제공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
 "대리인등"이라 한다)이거나
 대리인등이었던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
또는 그 대리인등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- 3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,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 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66조의10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,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6조의11(존속기한) 외국인보호 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. 제66조의12(심의·의결 등) ① 외 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

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• 의결

한다.

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의·의결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 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 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
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·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, 관계인,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,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6조의13(의결정족수 등) ① 외 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.
-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-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 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한 문서로 한다.

제66조의14(분과위원회) ① 외국 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<u>제66조의15(사무국의 설치 등) ①</u> <u>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</u>

<신 설>

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 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한다.

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

- 을 두며,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.
 ④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그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 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66조의16(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) 외국인보호위원회(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

- 제9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7. (생략)
 - 8. 제51조제1항·제3항, <u>제56조</u> <u>또는 제63조제1항</u>에 따라 보 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 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 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(제93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
 - 9. <u>제63조제5항</u>에 따른 주거의 (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위 반한 사람

<u>본다.</u>
제66조의17(운영) 이 법에서 정한
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
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95조(벌칙)
<u>.</u>
1. ~ 7. (현행과 같음)
8 <u>제56</u> 조,
제63조제1항 또는 제63조의3
제63조제1항 또는 제63조의3 제1항
제1항

[별지 제1호서식]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
1	기66 기 이 4	외국인 보호·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		
1	제66조의4	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		
2	제66조의15	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 보호		
	세00조의13	위원회에 사무국 설치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	
1	제66조의4	제3호 :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	
2	제66조의15	제3호 :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	

2. 상세 사유

○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를 개정안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나 상임위원 수, 사무국 구성 등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, 향후 직제 등 대통령령 개정 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할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O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・국장
김현옥	곽은상	유성오	김정도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곽은상	02-2110-4359	kwakes35@korea.kr